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 발의연월일: 2024. 6. 5.

발 의 자:유동수·강준현·김윤덕

박홍배 • 윤준병 • 복기왕

김성회 • 박민규 • 정진욱

이훈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74만원"을 "90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74만원"을 "90만원"으로, "66만원보다"를 "75만원보다"로, "66만원으로"를 "75만원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66만원"을 "75만원"으로, "50만원보다"를 "55만원보다"로, "50만원으로"를 "55만원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50만원"으로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공 제 액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100मी ० ची	99만원+(180만원을 초과하는	
18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소득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 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근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①
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	
을 공제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 세액공제액130만원 이하산출세액의 100분의 55 71만5천원+(130만원을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 공제액 세액 18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100분의 55 99만원+(180만원을
<u>130만원 초과</u> <u>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u> 30)	<u>180만원 초과</u> <u>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u>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세 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이	1
하인 경우: <u>74만원</u>	<u>90만원</u>
2. 총급여액이 3천 300만원 초	2
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 <u>74</u>	<u>90</u>
<u>만원</u> - [(총급여액 - 3천 300	만원
만원) × 8/1000]. 다만, 위 금	
액이 <u>66만원보다</u> 적은 경우에	<u>75</u> 만원보다

		-1 1
느	66만원으로	하다
_	ひしてにニエ	ĭ' –

- 3.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 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u>66만</u> 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u>50만</u>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u>50만원</u> 으로 한다.
- 4.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u>50만원</u> - [(총 급여액 - 1억2천만원) × 1/ 2]. 다만, 위 금액이 20만원보 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으로 한다.

③ (생 략)

<u>/5</u> 만원으도
3
<u>75만</u>
<u>원</u>
<u>55만</u>
<u> 원보다</u> <u>55</u> 만원
<u>으로</u>
4
<u>55만원</u>
③ (현행과 같음)